

2020년 기업법 및 투자법에 대한 뉴스

제 59/2020/QH14 호 기업법
및 제 61/2020/QH14 호
투자법 상 주목할 만한 내용

2020년 07월 29일



개요

- 2020년 06월 17일에 베트남 국회는 기업의 시장 진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 59/2020/QH14호** 기업법(2020년 기업법)과 **제 61/2020/QH14호** 투자법 (2020년 투자법)을 승인하였다.
- 제 2020년 기업법 및 제 2020년 투자법은 2021년 01월 01일 부터 유효하며(2020년 투자법 일부 조항 제외), 제 68/2014/QH13호 기업법 및 제 67/2014/QH13호 투자법을 대체한다.

주요 내용

제 2020년 기업법은 10개 장, 21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1. 전자 포탈을 통한 사업자 등록 절차, 날인 샘플 통보 절차 및 법인장 정보 변경 신고 폐지등과 같은 일부 행정 절차 폐지 또는 절차 명확화;
2. 유한책임회사 및 합작회사(Joint Stock Company)의 기업구조에 관한 일부 사안을 명확화 (예: 회사의 법률적 대표, 자산을 통한 자본투자 기한, 보통주 주주의 권리, 감독 위원회);
3. 투표권이 없는 예탁증서에 대한 정의와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
4. 국영기업의 개념을 확대;
5. 가족사업에 관한 별도 규정;
6. 기업 구조조정 관련 규정.

제 2020년 투자법은 07개 장, 77개 조, 04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1. 주식 매입, 자본 출자,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 기준 등과 같은 행정절차 간소화;
2. 투자사업 개시, 투자사업 변경 및 연장, 자본금 평가, 투자사업 종료 절차;
3. 투자정책 승인 권한 조정;
4. 조건부 투자 또는 투자 금지 사업분야 목록 개정;
5. 투자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위한 추가 양식, 수익자, 사업분야, 특별 인센티브 및 지원)

2020년 기업법 및 투자법에 대한 뉴스

제 59/2020/QH14 호 기업법
및 제 61/2020/QH14 호
투자법 상 주목할 만한 내용

2020년 07월 29일



2020년 기업법

1. 행정 절차

전자상거래법 (제26조)

- 전자포탈을 통한 사업등록 신청에 대한 상세 규정이 추가되었다. 기업주들은 온라인을 통해 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인 인감 (제43조)

- 제 2020년 기업법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디지털 형식의 법인인감 사용 지침을 제공하고, 법인인감 공식 사용 전 샘플 통보 조항을 폐지하였다.
- 기업은 본사, 지사, 사무소의 법인인감 형식과 내용, 갯수, 형식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법적 대표자 (제12조)

- 각각의 법적 대표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가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각 법적 대표자는 제3자에게 있어 기업의 합법적인 대표자이며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자산을 통한 자본 출자 (제 47,75,113조)

- 자산을 통한 자본 출자의 경우 자본 출자 기간에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 자산 운송 및 수입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통 주주의 권리 (제115조)

- 기업 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 또는 주주총회 소집 등과 같은 주요 권리 행사시 최소 지분비율 요건이 10%에서 5%로 완화되며 주주 또는 주주단체의 주식 계속 보유기간 요건을 폐지한다.

기업지배구조 (제54,79,137조)

- 국영소유 1인 유한책임회사 및 국영소유 또는 국영기업 자회사 소유의 2인이상의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할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감독위원회 설립 조항을 폐지한다.

3. 자본 조달

주식의 종류 (제114조)

-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가지는 예탁증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다.

사채 발행 (제46,47,74,128,129조)

- 기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채 발생가능한 회사목록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였다.
-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채 사모 발행 규정을 추가하였다.

2020년 기업법 및 투자법에 대한 뉴스

제 59/2020/QH14 호 기업법
및 제 61/2020/QH14 호
투자법 상 주목할 만한 내용

2020년 07월 29일



2020년 기업법

4. 국영기업

국영기업의 정의 (제4조, 제88조)

- 국영기업이란 국가기관이 정관 자본금 또는 투표권이 있는 총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다.

5. 가족기업

등록 및 운영 (제217조)

- 가족기업은 기업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족기업의 등록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규정에 따를 예정이다.

6. 기업구조조정

경쟁법 참고 (제200,201조)

- 2020년 기업법은 인수/합병 시 금지 또는 진행상황 통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대신, 인수/합병시 경쟁법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개인기업의 전환 (제205조)

- 개인기업의 주식회사 또는 합작회사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구조조정 후 기업의 권리 및 의무 (제198 -205조)

- 기업 구조조정 후 신설 기업, 분할된 기업, 신설합병 기업, 흡수합병 기업, 전환 기업의 모든 법적 의무와 권리 승계를 강조한다.

2020년 기업법 및 투자법에 대한 뉴스

제 59/2020/QH14 호 기업법
및 제 61/2020/QH14 호
투자법 상 주목할 만한 내용

2020년 07월 29일



2020년 투자법

1. 행정 절차

경제 단체 설립 (제22조)

- 외국 투자자는 중소 규모의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 투자 자금 설립 이전에 투자 프로젝트나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외국 투자자 투자 규정을 적용받는 경제 단체의 외국인 소유 기준 (제23조)

- 외국 투자자가 정관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단체(기존 51% 이상)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며 외국투자자에 대한 투자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외국 투자자의 자본금 출자, 주식/출자지분 매입 절차 (제26조)

- 외국 투자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금 출자, 주식 및 출자지분 매입에 대한 등록을 해야 한다.
 - ✓ 조건부 시장 진출 업종에서 활동하는 경제단체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소유권 증가의 경우;
 - ✓ 외국 투자자의 정관자본금 보유 비율이 50%이하에서 50%이상으로 증가 되거나 또는 해당 경제단체에 대해 외국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관자본금이 이미 50%이상인 경우
 - ✓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투자 프로젝트 수행 절차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제41조)

- 투자 프로젝트 내용, 규모 및 목표 조정; 투자 프로젝트 합병 및 분할; 투자자 변경; 투자 프로젝트 및 기타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 투자등록증명서의 수정 및 투자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시한다.
- 투자기간이 24개월 이상 연장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한다.

투자 프로젝트 기간 연장 (제 44 조)

- 프로젝트 기간 만료 후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낙후된 기술 사용 또는 환경 오염을 유발 할수 있는 프로젝트 제외), 투자법에서 규정한 최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연장을 검토한다.

투자 자본 평가 (제45조)

- 세금 부담액 계산을 위해 투자 자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투자 프로젝트 종료 (제 48 조)

- 투자자가 민법상 허위거래에 해당하는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투자 유관기관은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시킬 수 있다.

2020년 기업법 및 투자법에 대한 뉴스

제 59/2020/QH14 호 기업법
및 제 61/2020/QH14 호
투자법 상 주목할 만한 내용

2020년 07월 29일



2020년 투자법

3. 투자방침 승인 권한

총리의 투자 제안 승인권한 (제31조)

- VND 5조 이상 자본금 규모를 가진 프로젝트와 석유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총리의 승인이 더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 2곳 이상의 성급 인민위원회 승인이 동시에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총리의 승인권한이 추가되었다.
- 공항 항만과 관련된 신규 건설 투자 프로젝트, 주택투자 프로젝트(매매, 리스, 리스 매입), 도심 투자 프로젝트 등 총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및 상세 지침이 발표되었다.

성급 인민위원회의 투자 제안 승인권한 (제32조)

- 총리의 투자 승인권한에 속하지 않는 골프장 프로젝트, 주택투자 프로젝트 (판매, 임대, 리스 매입) 및 도심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제안은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한다.

4. 사업 분야

투자금지 사업 분야 (제6조)

- 채권추심 서비스가 투자 금지 사업 분야에 포함되었다.

조건부 사업투자 분야 (부록 IV)

- 2020년 투자법은 227개의 조건부 사업투자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2014년 투자법의 243 개에서 완화 됨);
- 프랜차이즈, 물류업, 해운 대리점업 등과 같은 다수의 사업분야를 조건부 사업투자 분야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 국가 관리 목적 및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을 위해 상수도 제공 서비스, 건설업, 수입된 언론, 출판물 등의 업종을 조건부 사업투자 분야 목록에 추가하였다.

외국투자자의 사업투자 분야 목록 및 시장 진출 조건 (제9조)

- 정부는 (a) 시장 진출제한 분야 및 (b) 조건부 시장 진출 분야를 포함한 외국투자자의 시장 진출 제한 업종 목록을 발표하였다. 두개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 외국투자자는 국내투자자와 유사한 시장 진출 조건을 적용받는다;
- 시장 진출 조건은 외국투자자의 정관자본금, 투자형태, 사업투자 활동 범위, 자금능력 및 기타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2020년 기업법 및 투자법에 대한 뉴스

제 59/2020/QH14 호 기업법
및 제 61/2020/QH14 호
투자법 상 주목할 만한 내용

2020년 07월 29일



2020년 투자법

5. 투자 인센티브

투자 인센티브 형태 (제15조)

- 가속상각,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 비용 확대등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투자인센티브가 추가되었다.

투자인센티브 대상 프로젝트 (제15조)

- 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VND 6조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는 프로젝트, 창의적인 스타트업, R&D 센터등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대상 목록이 수정되었다

투자인센티브 대상 분야 (제16조)

- 다음과 같은 투자인센티브를 적용받는 투자 및 사업분야가 추가되었다: 과학기술 법령에 따른 과학,기술에 근거한 제품 생산; 대학교육; 의료기기 제조; 산업클러스터 및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제품 생산

특별 투자지원 및 인센티브 추가 (제20조, 제75조)

- 경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 프로젝트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 투자 지원 및 인센티브 허용
 - 총 투자 자본이 3조 VND 이상이고 투자 등록증 발급일 또는 투자 승인일로부터 3년내에 최소 1조 VND 이상을 투자하는 혁신 센터, 연구 개발 센터 또는 총리의 결정으로 설립 되는 국가 혁신 센터 신규투자 사업(확장 사업 포함); 및
 - 총 투자자본이 30 조 VND 이상이고 투자 등록증 발급일 또는 투자 승인일로부터 3년내에 최소 10조 VND이상 자금 지출하는 특별 분야 투자프로젝트.
- 2020년 투자법은 특별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소득세법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더 낮은 우대세율 적용, 우대세율 및 법인세 면제 및 감면 기간 확대). 총리는 상세한 인센티브 기준을 승인할 예정이다.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